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따라 제247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대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4일

순 천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4. ~ 12. 9.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0년 12월 9일까지 순천시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

1)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명로 30 (장천동, 순천시의회) / 우 : 57956

2) 이메일 : gowoon@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의회사무국(전화 : 061-749-495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1부. 끝.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복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47호
----------	--------

○ 발의연월일 : 2020. 11. 24.

이복남 의원, 박종호 의원

문규준 의원, 장숙희 의원

○ 발 의 자 : 남정옥 의원, 나안수 의원

박혜정 의원, 김영진 의원

박재원 의원, 김미애 의원

1. 제안이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등 (안 제1조 ~ 제4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안 제5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
- 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 감염병 표본감시, 역학조사 등 (안 제8조 ~ 제10조)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안 제11조)
-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및 환자 관리 등 (안 제12조 ~ 제17조)
- 감염병 예방 조치 등 (안 제18조 ~ 제23조)
-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 (안 제24조 ~ 제25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 환자, 법 제2조제14호의 감염병 의심환자 및 법 제2조제15호의 병원체 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시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방안 및 위기 대응 역량의 강화방안
4. 감염병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2.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준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감염병 관련 의료인 및 감염병 관련 의료기관, 의료인 단체
3. 감염병 업무 및 재난안전 업무 담당 국·소장
4. 그 외 감염병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와 관련되어 위촉·임명된 위원은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표본감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시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 시기 및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예방접종)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시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시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시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감염병 관련 위기경보 단계 발령 시 감염병 업무의 비상대책 지원을 위하여 순천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⑤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 만으로 감염

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 ⑤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감염병환자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5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

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버스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7조(감염병환자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등이 제16조에 따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9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시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법 제47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소독 의무) 시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51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방역소독 실시권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의무소독대상 시설이 아닌 곳의 경우에

도 다수가 이용하여 공중위생상 소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 또는 설치한 경우 시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인근 지자체, 순천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351호
----------	--------

발의연월일 : 2020. 11. 26.

발의자 : 최병배 의원

1. 개정이유

- 기존 조례에서 누락되어 있는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기존 위원과 임기 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25조)
- 위원회 위원 결원 발생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안 제26조)
(기존) 위촉된 날부터 새로 시작 → (변경) 전임자의 잔여임기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6조(종전의 제25조) 제3항 중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를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2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p><u>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u></p> <p>① ~ ② (생략)</p> <p>③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u></p>	<p><u>제2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u></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u>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u></p>

도로명주소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 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도로명주소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종합계획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위한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6.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도 집행계획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3. 시·도의 제11조에 따른 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순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7. 31.] [전라남도순천시조례 제2160호, 2020. 7. 3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02. 10.>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02. 10.>

제2장 <삭제 2010. 02. 10.>

제3조 <삭제 2010. 02. 10.>

제4조 <삭제 2010. 02. 10.>

제5조 <삭제 2010. 02. 10.>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개정 2010. 02. 10.>

제6조 <삭제 2010. 02. 10.>

제7조 <삭제 2010. 02. 10.>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 산정은 순천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 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 비용의 징수는 순천시 수입증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0. 02. 10.]

제8조의2(원인자부담)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 집행한다.<개정 2020. 07. 31.>

[본조신설 2010. 02. 10.]

제4장 <삭제 2010. 02. 10.>

제9조 <삭제 2010. 02. 10.>

제10조 <삭제 2010. 02. 10.>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무)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0.>

[제목개정 2010. 02. 10.]

제12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① 순천시의 도로·건축물·토지이용계획·지적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② 도로명주소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제목개정 2010. 02. 10.]

제13조 <삭제 2010. 02. 10.>

제14조 <삭제 2010. 02. 10.>

제6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개정 2010. 02. 10.>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주소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0.>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개정 2010. 02.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0. 02. 10.]

제17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제목개정 2010. 02. 10.]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조사·유지관리 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제7장 도로명주소시설을 이용한 광고 <개정 2010. 02. 10.>

제19조(광고의 범위) ① 시장이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02. 10.]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시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0.>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 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개정 2010. 02. 10.>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02.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0. 02. 10.>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3. 순천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0.>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

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 <삭제 2010. 02. 10.>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주소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0. 02. 10., 2018. 10. 01.>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02. 10.>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삭제 2010. 02. 10.>

제3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02. 10.>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조례 제1020호, 2008. 06.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조례 제1150호, 2010. 02.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순천시새주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순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조례 제1602호, 2015. 12. 31.>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921호, 2018. 10. 0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2160호, 2020. 07. 31.> (순천시 재무 회계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준용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서정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3346호
----------	--------

발의년월일 : 2020. 11. 23.

발 의 자 : 서정진 의원, 강형구 의원
오행숙 의원, 장숙희 의원

1. 제정이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목적, 적용범위(안 제1조~안 제2조)
-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및 사업구분(안 제3조~제4조)
-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안 제5조)
- 위원회의 기능,위원회 소집 및 의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안 제6조~안 제8조)
- 주민회의 개최(안 제9조)
- 사업계획 수립, 직접지원사업의 신청 및 사업비의 배분(안 제10조~안 제12조)
- 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및 사업비의 집행(안 제13~안 제14조)
-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의 반환(안 제15조~안 제16조)
- 감독, 사후관리, 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안 제17조~안 제19조)
- 준용(안 제20조)
- 부칙(안 제1조~안 제3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3조

5. 예산상황 : 예산의 범위에서 수립·시행하는 지원계획에 따른 재정 수반

6.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법례

- 보성군 주암호 주변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외 40개 조례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영산강섬진강수계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과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암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관리지역 및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 송주읍·주암면·송광면·외서면·낙안면·상사면으로 한다.

제4조(사업구분) 「영산강섬진강수계법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일반지원사업(직접지원사업·간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과 「댐건설법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지역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대상지역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읍·면장 및 시의원(희망의원)이 되고, 위촉직은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주민으로 상수원관리지역의 실정에 밝고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③ 읍·면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읍·면장 또는 주민대표(시의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당연직의 임기는 해당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희망자가 없는 등 해당 마을 여건 상 부득이한 경우 읍·면장 직권으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거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 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운영 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상지역 읍·면의 업무담당직장으로 하고,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사업의 지원여부 및 배분액 결정 협의
3. 사업비의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등의 주민공개
4. 시설유지 사후관리 방안 및 수익금 활용방법 등 협의
5.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업무의 조정 및 협의

제7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일시, 장소, 참석위원, 의결 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회의 개최) ① 읍·면장은 마을별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마을이장(단, 이장이 공석일 경우에는 마을개발위원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하며, 사업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가구별 세대주의 의견을 수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회의는 마을별 세대주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업계획 수립) ① 읍·면장은 제9조에 의거 마을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이 주민지원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후 「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당초 계획한 사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수립 절차에 준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사업의 변경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간접지원사업

가. 당해연도 간접지원사업으로 승인한 사업계획 중 사업비의 50%이내 변경

2. 지역지원사업

가. 6월의 범위 안에서 당초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당초 사업면적 또는 금액 증감

다. 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 세부 사업내용 변경

제11조(직접지원사업의 신청) ① 최초 직접지원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를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관련법 및 사업 지침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배분) ① 시장은 「영산강섬진강수계법」 및 「댐건설법」에 의해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를 읍·면장의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개최 이전에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과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을 적용하여 읍·면별 주민지원사업비를 재원별로 구분 배분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배분된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하여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규칙」 제37조의 일반지원사업비 배분기준과 「댐건설법 시행령」 별표 8을 적용하여 마을별로 사업비 배분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 지원여부 결정 통보) 시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수립된 사업계획이 「영산강섬진강수계위원회」 및 「주암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협의회」에서 승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의 집행) 주민지원사업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순천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권의 임의유용 가능성이 없는 마을회관, 노인회관 및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주민 전부 또는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마을회 등의 주민공동체(이하 “주민공동체”라 한다)가 집행할 수 있다.

1.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공동체에서 집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관련 설계서 검토, 매입부지 감정평가, 철저한 준공검사, 계약 대행 등을 통한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하여야 한다.

2. 마을 공동 영농 자재(유기질 비료, 묘목, 표고목 등)는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구입 또는 구매 대행하여 농가에 배부하여야 한다.
3. 마을공동 영농기구, 물품 구입 등은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직접 시행하거나 민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주민공동체는 소유권 등기에 “이 토지 또는 건물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제한 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라고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5.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5조(사업의 취소) ① 시장 또는 읍·면장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및 확정자(이하 “보조사업자” 라고 한다.)가 자격요건 상실, 지원 조건 위반, 사업 중도 포기, 기타 지원사업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지원사업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읍·면장은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제17조(감독) 시장 또는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되도록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전반에 걸쳐 관리·감독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시장 또는 읍·면장 및 보조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물품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읍·면장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 매년 2회이상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 기록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주민 및 공무원 각 1명)를 지정하여 방치 또는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2. 단위사업별 관리카드 비치 및 기록·유지
- ③ 보조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된 시설 및 물품이 방치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방치, 도난, 타 목적 사용 등 관리가 부실한 경우에는 동일사업 및 물품에 대한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사업 추진실적 및 결산보고) ①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준공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완료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집행상황을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7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읍·면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사업 결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관련 지침 등을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읍·면별로 구성된 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행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 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 나.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주민지원사업)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5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군·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3.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 설치 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의 지원사업
4. 오염물질의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영산강섬진강수계법 시행령)

[시행 2019. 7. 2]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제23조(주민지원사업의 시행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중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비의 규모
2. 다음 해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수립지침 및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기준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4월 3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3의 주민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

2.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 사항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시·군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 의회의 동의를 얻은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계획 중 사업규모, 주민지원사업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지침에서 정한다.

⑥ 시장·군수는 매 연도의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결과를 분석·심의하고, 향후 사업계획의 심의·조정 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추진결과의 분석·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댐건설법)

[시행 2020. 10. 1] [법률 제17175호, 2020. 3. 31, 일부개정]

제43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 ①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건설이 완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댐수탁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한다.

1.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

2. 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⑤ 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댐건설법 시행령)

[시행 2021. 1. 1] [대통령령 제31154호, 2020. 11. 10, 일부개정]

제41조(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지역의 범위(이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0.>

1.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 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댐저수사용료 보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속하는 특별자치도·시·군 또는 구의 각 관할지역

2. 댐의 발전소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이나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다음 각 목의 지역 중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가. 인공 방수로(放水路)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
나.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지

다. 그 밖에 댐의 건설 및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역으로서 지원이 필요한 지역

②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3. 분기별 재원조달계획(댐관리청, 댐사용권자 또는 생활용수댐·공업용수댐의 수도사업자의 분기별 출연금액 및 출연 시기를 포함한다)

4. 사업별 투자계획

5. 사업별 시행기간·시행자 및 사업내용

6.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매년 10월 10일까지 다음 해의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42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10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개정 2017. 6. 2., 2020. 11.

10.>

④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과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0. 11. 10.>

⑤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그 변경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댐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6개월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2.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원래의 사업면적의 증감
3. 사업목적의 범위에서의 세부 사업내용의 변경

[전문개정 2011. 11. 30.]

주민지원사업의 세부내용(제22조제1항 관련)

1. 간접지원사업

가. 소득증대사업

- 1) 농기구 수리시설, 생산품 공동저장소, 농로, 농업용 저수지, 농업용 배수로, 농업용 양수장 및 배수장, 농작물 재배시설, 임산물재배시설 등 농림수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2) 분뇨 분리 구조로의 축사 개선, 톱밥 등 수분조절재 공동구입, 공동 퇴비화 시설의 설치 등 축산업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3) 환경농업으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자재, 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의 지원
- 4)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복지증진사업

- 1) 상수도 시설, 중수도 시설, 수세식 화장실(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는 지역에만 한정한다), 소규모 도로 등 주민편익시설의 설치·운영
- 2) 주민의 건강진단, 진료소·의료기구 및 구급차 등 의료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3)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어린이놀이터 및 버스승차대기장 등 사회복지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 4) 도서관·유치원·통학차 및 문화시설의 설치 또는 구입·운영
- 5) 육아시설 또는 탁아시설의 설치·운영
- 6)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육영사업

교육기자재 및 도서의 공급, 학교급식시설 지원, 환경교육관의 설치,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등 육영관련사업과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오염물질정화사업 등

- 1)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시설 또는 생활오수처리시설, 내수면양식장의 수질오염방지지설, 축산폐수의 정화처리 또는 자원화를 위한 시설 등 오염물질 정화시설과 우·오수 분류식 하수관로의 설치
- 2)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정으로 환경규제기준이 강화되어 다른 지역보다 오염물질의 정화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의 소요비용에 대한 지원사업
- 3) 조림 및 육림사업 등 산림사업
- 4) 그 밖에 위원회가 오염물질의 정화시설 설치·운영사업, 환경농업지원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비고: 간접지원사업 중 다른 법령 또는 국가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2. 직접지원사업

가. 태양열이용시설·취사시설 설치자금의 지원 등 주거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

나. 주택개량 등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다.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장학기금의 적립·운영

라. 법 제21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이주 또는 전업에 대한 지원

마. 전기료·의료비·정보통신비 등에 대한 지원

바.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에의 투자를 통한 소득증대사업

사. 임금 보전을 통한 고용창출사업

아. 노인복지시설 입주 지원을 통한 복지사업

자.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정하는 가구별 지원

3. 특별지원사업

가.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나.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다.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라. 그 밖에 수질개선,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제40조제2항 관련)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1. 지역 지원 사업	가. 소득증대 사업	1) 공동영농시설·농기구수리시설·생산품공동저장시설·농로·농업용수로 및 농업용양수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사업 2) 톱밥 등 수분 조절재의 공동구입 및 공동퇴비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사업 3) 환경농업 기자재 및 유통시설 등 환경농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생활기반 조성사업	1) 의료기구 및 구급차량 구입 지원 등 의료환경조성사업 2) 노인회관·마을회관·가로등·통학차·버스승차대기장 등 생활여건 개선사업 3) 그 밖에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지원사업
	다. 댐 주변 경관 활용사업	1) 들레길, 자전거도로, 캠핑장,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댐 주변경관을 활용한 휴양 및 레저 관련 시설 설치사업 2) 그 밖에 댐 경관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2. 주민 지원 사업	가. 주민생활 지원사업	1) 주민건강진단, 의료보험료 지원, 고립주민 교통비 지원, 난방비 지원, 통신비 지원, 전기료 보조, 홍수 조절지 친환경영농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육영사업	1) 교육기자재·도서의 구입, 학자금·장학금의 지급, 학교 급식시설 지원 및 아동급식비 지원 등 육영 관련 사업 2) 그 밖에 댐 주변지역의 육영(育英)을 위하여 지원사업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그 밖의 지원 사업	가. 댐저수 사용료 보조사업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댐의 저수를 사용하고 댐사용권자 또는 댐사용권 설정예정자에게 납부하는 댐저수사용료를 보조하는 사업
	나. 홍보 및 부대사업	1) 지역문화행사 지원, 댐환경보전연구 지원, 농기구 수리, 댐 주변 고립지역 도선(渡船) 운영 지원, 자매마을 지원 등 대민 지원, 대청결운동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 2) 댐 주변 전망시설,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계류시설, 댐 및 지역문화 홍보시설, 전시·공연시설 등의 설치사업 3) 지역 홍보, 주민간담회, 댐 견학 등 홍보사업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 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비고: 각 사업의 내용에 해당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사, 계획, 연구, 시설의 유지·보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제37조제1항 관련)

1. 지역별 가중치

가. I 지역(상수원보호구역): 1.1

나. II 지역(수변구역): 1.0

2.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times (\text{해당 지역의 면적} \times \text{해당 지역의 가중치}) \div \{(I \text{ 지역의 면적} \times 1.1) + (II \text{ 지역의 면적} \times 1.0)\}$

비고: "해당 지역"이란 I 지역, II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 =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50/100 \times (\text{해당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div (\text{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 \text{II 지역의 주민지원사업대상자 수})$

4. 배분액 산정방법

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배분기준(제44조제2항 관련)

1.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수몰지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2. 지원금의 100분의 3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제41조제1항제1호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정한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이 속하는 읍·면·동의 인구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읍·면·동의 인구는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에 접한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1
 - 나. 댐(보조댐은 제외한다. 이하 다목, 제3호가목 및 다목에서 같다)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7
 -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이 속하는 읍·면·동(가목·나목의 읍·면·동은 제외한다)의 인구: 전체 인구수×0.5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읍·면·동의 인구: 전체 인구수×0.3. 다만, 시와 광역시의 동은 각각 0.1 및 0.03으로 한다.
3.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하는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경우 댐주변지역지원사업구역별 면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출한다.
 - 가.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1
 - 나.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가목 외의 지역: 해당 면적×0.7
 - 다.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초과 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해당 면적×0.5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해당 면적×0.3
4. 지원금의 100분의 20은 댐관리청 또는 댐수탁관리자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통·환경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사업협의회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안 번호	제3349호
----------	--------

- 제출자 : 순천시장
- 제출일시 : 2020. 11. 24.

1. 제정이유

- 2020. 6. 17. 순천소형경전철(스카이큐브) 무상인수 중재 판정에 따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형태 및 운영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시설의 운영 시간, 이용료, 발권방법 등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0조)
- 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원, 수탁자 선정, 의무 부과, 지도·감독 등 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수익금의 사용 등(안 제11조~제17조)

3. 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궤도운송법」,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 없음

6. 예산상황 : 비용추계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0. 10. 30. ~ 11. 18.) 결과
 - 시민인수위원회 경영분과위원회 의견 : 2020. 11. 16.(국가정원운영과-12028)
 - 통합요금 일반권 및 청소년 할인 폭 3,000원 ⇨ 2000원으로 조정(수용)
 - 국가정원 시민 무료입장객 중 유아 및 어린이에 대해 할인 적용(수용)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2020. 11. 4.(여성가족과-22936호)
- 예산부서 심의필 : 2020. 11. 9.(기획예산실-15615호)
- 규제개혁 심의필 :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 2020. 11. 9.(기획예산실-15615호)
- 법제부서 공고필 : 2020. 10. 30.(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공고 제2020-10호)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소형경전철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소형경전철”이란(이하 “소형경전철”이라 한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 순천만습지 사이에 설치된 궤도시설물, 궤도차량,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궤도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이용료”란 소형경전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소형경전철 관리·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소형경전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휴무일”이란 소형경전철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날을 말한다.

제3조(운영시간) ① 소형경전철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10:00 ~ 18:00
2. 주말 및 공휴일 09:00 ~ 18:00

②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형경전철 유지 관리와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시간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정기휴무) 소형경전철의 정기휴무일은 월요일로 한다. 단, 휴무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

제5조(임시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형경전철 운영을 임시휴무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가 필요할 때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궤도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기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발권방법) 발권은 편도권, 왕복권, 통합권으로 하며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및 소형경전철 정거장에서 발권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인 발권 및 인터넷 예약 발권을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소형경전철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면제·감경대상에 해당될 경우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반환한다.

1. 소형경전철 운행 중 차체결함 등으로 더이상 운행할 수 없을 경우
2. 소형경전철 운행에 필요한 기타 시설물의 안전상 문제 또는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소형경전철을 이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한 경우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 및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형경전철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7세 미만의 어린이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궤도시설 운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제10조(손해배상) ① 관리자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궤도 시설의 손해에 대하여 이용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또는 수탁자의 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운영위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한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소형경전철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4.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수탁목적 외로 이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시장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제14조(조직) 소형경전철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책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소형경전철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이용료의 사용) 이용료는 시설 유지보수, 환경정비, 관광객 확충 및 경영활성화 사업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시장이 소형경전철 관리자로 운영을 개시한 때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이 용 료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조례 제7조 관련)

구 분		소형경전철		통합요금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소형경전철)	비고
		왕복	편도		
일반권	성인	8,000	6,000	14,000	
	청소년, 군인	8,000	6,000	12,000	
	어린이	6,000	5,000	8,000	
	유아	6,000	5,000	5,000	
순천시민	성인	6,000	5,000	6,000	
	청소년, 군인	6,000	5,000	5,500	
	어린이	6,000	4,000	4,000	
단체 (20인 이상)	성인	7,000	5,500	11,000	
	청소년, 군인	5,000	3,500	8,000	
	어린이	4,000	3,000	6,000	
	유아	4,000	3,000	3,000	
	순천지역 중/고등학교	4,000	3,000	4,500	
	순천지역 초등학교	4,000	3,000	3,000	
1년권/ 순천시민 1년 회원권 소지자		•왕복 탑승요금에서 2,000원 할인된 금액			

- ※ 1.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한 관광주간 할인행사 등 기타 중복 할인 불가
- 2. 순천만국가정원 및 순천만습지 무료 입장객에 대해서는 통합할인을 적용하지 않음

< 면제 대상 >

1. 국민 ·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 또는 소형경전철 관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순천시민인 유아. 단, 유아 2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시 탑승 가능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비 고 >

1. “유아”란 36개월 이상 ~ 만 7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생 및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과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4.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6. “단체”란 동일한 목적으로 입장하는 20명 이상의 유료 관람객을 말한다.
7. “1년권”이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8.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이란 순천시민이 발행일로부터 1년간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낙안읍성,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는 관람권을 말한다.

순천소형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관련조문)

- 비용발생 요인 : 시설물 위탁운영 및 궤도 관리, 운영비 지원
- 관련 조문 : 제7조(이용료), 제11조(운영위탁), 제14조(예산의 지원)
 - (제7조) 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 (제11조) 시장은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 (제14조) 시장은 궤도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으로 함
- 매출은 통합발권 홍보 및 문학관역 ~ 순천만 습지 도보이동 구간 이동수단 마련으로 2021년기준 매년 2% 증가 산정
- 평균탑승운임은 7,000원(통합발권)의 83%인 5,810원으로 산정
 - * 기존 8,000원 대비 5년간 평균 탑승료(6,680) 비율 83% 적용
- 소형경전철 시설물 위탁운영 및 궤도 관리, 운영비 지원 등을 추계 산정
- 재료비는 과거 5개년 평균 금액 기준 매년 2%씩 상승 산정
- 인건비는 매년 3% 상승 산정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 비용(a-b)	7,143,300	970,500	1,153,500	2,633,500	1,184,500	1,201,300
세입(a)	19,254,000	2,992,000	3,590,000	5,127,000	3,735,000	3,810,000
세출(b)	12,110,700	2,021,500	2,436,500	2,493,500	2,550,500	2,608,700

※ 2021년부터 순천만국가정원과 통합발권으로 세입증가 예상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인한 세입증가 예상

3-1. 세입 비용추계

(단위: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총계	19,254,000	2,992,000	3,590,000	5,127,000	3,735,000	3,810,000
소형경전철 이용료 수입	19,254,000	2,992,000	3,590,000	5,127,000	3,735,000	3,81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구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 계	12,110,700	2,021,500	2,436,500	2,493,500	2,550,500	2,608,7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12,110,700	2,021,500	2,436,500	2,493,500	2,550,500	2,608,70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2021년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기 초	금 액
총계 (세입-세출)			970,500
세입	소계		2,992,000
	입장료	▪ 탑승인원 617,000명 × 탑승료 5,810원 × (10/12)개월	2,992,000
세출	소계		2,021,500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경전철 인수위원회 참석수당 : 10,000,000원 ▪ 소형경전철 건축물 등기이전비 : 10,000,000원 ▪ 국내 벤치마킹 견학 출장여비 : 1,500,000원 ▪ 소형경전철 위탁운영비 : 1,800,000,000원 ※ 직원현황 : 총25명(관리 4, 기술 21) 	1,821,500
	시설투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경전철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 100,000,000원 ▪ 소형경전철 시설물 유지보수 : 50,000,000원 ▪ 소형경전철 개선 및 물품 구입 : 50,000,000원 	20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장 이기정 (☎ 2722)

순천만관리센터 국가정원운영과 스카이큐브인수TF팀장 김종길 (☎ 2830)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옥의원 발의)

의안 번호	제3353호
----------	--------

발의연월일 : 2020. 12. 3.

발 의 자 : 이명옥 의원

1. 개정이유

- 지역별 특성과 주민들의 의견이 고려되도록 보다 탄력적인 풍력발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개정(제20조의2 제3항)
 - 입지제한 기준에 “도로” 제외
 - 단서 조항 신설
 - 다만,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3. 개정조례안 : 별첨

4. 관련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③ 풍력 발전시설은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② (생략)</p> <p>③ 풍력 발전시설은 <u>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0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u></p> <p>④ ~ ⑦ (생략)</p>	<p>제20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허가의 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u> ----- <u>다만, 1,000m 이상 지역으로서 입지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를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u></p> <p>④ ~ ⑦ (현행과 같음)</p>

참고

관련법령 등 자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13]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타법개정]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9. 8. 5.>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7. 12. 29.>

개발행위허가기준 (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 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